

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#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정 2021년 6월 14일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10조에 열거된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하되,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1. 사외이사 중 연장자
  2. 사내이사 상위직급자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6조 (소집)

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7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8조 (의사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진술 청취,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,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
가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,000분의 5 이상인 경우  
나 연간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,000분의 25 이상인 경우
  2.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(사익 편취 규제)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
  3.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
  2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 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의사록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보 칩

### 제12조 (내부거래위원회 지원부서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② 내부거래위원회 지원부서는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담당한다.

### 제13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21. 6. 14.)

**제1조 (시행일)**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0조 제1항 부의사항 중 법령상 이사회 승인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한다.